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위세이브오션스”(이하 “단체”라 함)라 하고, 영문 명칭은 “We Save Oceans”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바다의 보호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바다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 2.바다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 3.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4.국내외 환경단체와의 연대
- 5.기타 “위세이브오션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조] (운영 원칙) 1.이 단체는 회원들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금전 기부를 일체 받지 않는다.

2.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자금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구현한다.

[제5조]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여의도동 신송빌딩 1205-ES25호)”으로 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된다.

2.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3.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 준회원으로 가입되고 3개월 간 자격이 유지된다.

2) 정회원:

- 준회원 가입 후 3개월 간의 활동을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정회원으로 승급

- 또는 기존 정회원, 종신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정회원 가입 가능

- 정회원은 1년에 2명의 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종신회원:

- 최초 발기인 30인으로 구성되며 홍보대사를 겸임할 수 있다.

- 1년에 10명의 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 종신회원은 단체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단체의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단체는 이사장,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선을 통해 충원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상임이사)

1. 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
 -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

제 4 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1.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 2.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3.임시 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정회원,종신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4.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단체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사업계획의 승인
- 6.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 
- 1.재적 정회원,종신회원들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 (재정수입)

1. 본 단체의 재정수입은 스위스 소재 보스아고라 재단의 “Better World Fund”로부터 취득한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단체는 단체의 예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3. 단체가 예산 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단체는 1월 전에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는 1월 전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한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24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26조] (해산)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7조] (잔여 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게 귀속시킨다.

[제28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규정과 통상의 관례를 준용한다.



[제29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사업자고유번호증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회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회원)

본 단체 설립 당초의 이사장 및 회원은 다음과 같다.